

신규 고용을 하면서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일손은 달리는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선뜻 채용하기 힘든 것이 바로 소규모 기업들의 고충이다. 이 때 노동부의 각종 고용안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신규고용촉진에 따른 장려금까지 받으며 다양한 인재를 만나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.

Q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할 때,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과 노동부 지원 내역이 궁금합니다.

A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'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(국가 또는 지자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, 고려자 인재은행,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려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)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'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한다. 따라서 실직자가 일반사설인력소개소나 인터넷 구인구직관련 사이트에 임의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라도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별도의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. 즉, 실직자가 일반사설인력소개소나 인터넷 등에 구직등록을 했는가 안했는가와 관계없이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, 실직기간의 인정은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로부터만 인정된다.

대상자별 실업기간과 기간별 지원금

- ※고령자이면서 제조업에 취업한 자 및 여성실업자, 중증장애인 - 실업기간 1개월 이상
- ※일반고령자, 29세미만 청년,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- 실업기간 3개월 이상
- ※기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 - 실업기간 6개월 이상
- ※지원금액 -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,

이후 6개월은 30만 원이고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월 60만 원이 지원되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참고적으로, 다른 고용촉진지원금(고령자, 여성, 장애인, 장기실직자)은 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, 29세미만의 청년고용촉진지원금제도는 2004.10.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였다. 그러나 노동부는 올해 9월 말 종료되는 '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' 제도를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.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체가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.

Q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?

A 1기업당 3명 한도에서 전문 인력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 대상 기업은 제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벤처협회 회원사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. 이 제도가 지원하는 대상 인력은 기술사, 제품 기술 개발자, 석·박사 등 전문 인력이다. 그러나,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제외
2.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 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 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감원시키지 않아야 함
3. 단,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% 이상을 지원하는 기업에서 부담할 것.
이 제도에 따라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은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 원,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 원이며 지원상한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액의 3/4이다. 채용 절차는, 우선 전문인력을 채용(사용)하고 역월상 분기별(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)로 고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한다.

참고 사이트

▶ www.jobcenter.go.kr 고용지원센터 1588-1919 ▶ www.job.go.kr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-1350 ▶ www.ei.go.kr 한국고용정보원

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.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my@naver.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